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제 정 2009. 3.
개 정 2010. 6.
개 정 2012. 7.
개 정 2014. 12.
개 정 2015. 2.
개 정 2015. 5.
개 정 2015. 10.
개 정 2016. 2.
개 정 2016. 8.
개 정 2017. 11.
개 정 2018. 1.
개 정 2019. 3.
개 정 2019. 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학칙 제33조에 의거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삭제>2010.3.1 - 등록금징수규정에 의함

제2조의 2(등록금 분할납부) <삭제>2010.3.1 - 등록금징수규정에 의함

제3조 (등록학점 기준)

<삭제>2010.3.1 - 등록금징수규정에 의함

제4조 (재입학생 및 복학생의 등록)

<삭제>2010.3.1 - 등록금징수규정에 의함

제5조 (수강신청 기간) 수강신청 기간은 매 학년도 학사력에 근거하여 매학기 시작 전 일정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6.02.01.)

제5조의2(수강신청의 자격) 수강신청은 신청일 현재 재학 중이거나 입학 및 복학자에 한하며, 학적상태가 휴학, 졸업, 수료, 제적자는 수강할 수 없다.(개정2015.02.23.)

제6조 (수강신청 절차) ①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소속학부에서 교육과정표와 강의 시간표를 참고하여 지도교수 또는 학부장의 수강지도를 받고 해당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2016.02.01.)

②(삭제2016.02.01.)

③(삭제2016.02.01.)

④당해학기 수강소감설문(강의평가) 및 다음 학기 예비수강신청 미시행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시기 또는 과목 등에 대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수강신청 지도)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유의하여 학생의 수강신청 지도를 하여야 한다.(개정2016.02.01.)

1. 수강신청 교과목 순위는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고려하여 교양필수, 전공필수, 부·복수

전공, 교양선택, 전공선택 등의 순으로 하여야한다.

2.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전적 학교에서 취득한 교육내용 및 선이수과목의 이수 등을 고려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3. 학칙 제 33조에 반하여 기준학점을 초과하였거나 수강신청 학점이 등록학점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전공선택, 교양선택, 전공필수, 기초필수, 교양필수의 말미교과목 순으로 삭제한다.

4. 부·복수전공을 이수중인 자 또는 이수예정인 자는 이수중인 전공 또는 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5. 전과자의 경우 전공필수 및 선이수과목의 이수를 고려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 (수강신청 교과목의 순서) ①수강신청은 연도별 교육과정표에 따라 개설된 교과목을 기준으로 해당 학년에 개설된 과목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16.02.01.)

②미취득된 필수교과목은 우선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취득학점이 학칙 제 10조에 의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학년 차의 미취득 설강교과목을 우선하여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미취득 교과목이 선택 교과목으로서 선·후 이수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이를 수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직전학기 성적이 4.15 이상인 자는 다음 상위학년에 개설된 전공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제9조 (재수강 교과목의 수강신청) ①(삭제 2019.03.07.)

②본조 제4항에 따라 재수강을 신청하는 필수교과목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된 경우에는 학과에서 지정하고 총장이 승인한 대체 교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5.02.23., 개정 2015.05.04.)

③학부(과)장은 제2항에 의거 대체 가능한 교과목에 대하여 개강 교과목 확정시에 교무처로 대체 교과목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02.23.)(개정 2015.05.04.)

④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 이하일 경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수강 할 수 있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특성 및 학생의 수학능력 등을 고려하여 동일 과목의 재수강을 1회 또는 2회로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복학·재입학생의 수강신청) 복학·재입학생의 수강신청은 복학·재입학 당해 학년도의 동일학년이 적용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신청한다.

제11조 (편입학생의 수강신청) 편입학생의 수강신청은 편입학 당해 학년도의 동일학년이 적용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신청한다. 다만, 학부단위 평가위원회에서 부과하는 기초 교과목 등의 이수에 관한 사항은 편입학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의2(외국인 유학생의 수강신청 및 학점이수) ①2019학년도 2학기(8월)이후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입학(편입학 포함) 후 첫 학기에는 우송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에서 개설하는 한국어 관련 교과목을 13학점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어능력시험(TOPIK)3급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는 소속 학과의 전공과목과 병행하여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5.02.23.)(개정2016.02.01.)(개정2019.8.21.)

②위 1항에 따라서 이수한 한국어 관련과목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이수구분은 교양선택으로 표기한다. (신설 2015.02.23.)

③(삭제2016.02.01.)

④위 1항에도 불구하고 학부(과)단위의 교육과정이 외국어로 진행되는 학부(과)로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은 예외로 한다.

⑤편입한 외국인 유학생과 복수학위 외국인 유학생은 4학년 2학기까지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2017.11.14.)

제12조 (수강 교과목의 수업시간 중복 제한)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이수하여도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선택 교과목의 수강신청) 교양선택 및 해당학부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타 학부의 개설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부와 해당학부의 승인을 얻어 수강할 수 있다.

제14조 (대학원 개설교과목 수강) 학부과정학생의 대학원개설 교과목 수강은 학칙 제34조제1항에 따른다.2016.02.01.)

제15조 (수강신청학점의 범위) ①매학기 수강신청학점의 한도는 학칙 제33조에 의한 다.(개정 2015.02.23)

②학기별 최소 수강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2016.02.01., 2016.08.29., 2019.03.07.)

1. 1·2학기는 각 9학점, 여름·겨울학기는 각 2학점으로 한다.
2. 수강하는 학기가 졸업을 위한 마지막학기일 경우 최소 1학점이상으로 한다.
3. 학칙 제11조에서 정한 특별학기를 이수하는 경우 최소 1학점이상으로 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9학년도 이후 신입학생부터는 1학년 겨울학기이후 여름·겨울학기의 최소 수강학점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③교양교과목의 수강(이수) 학점은 교양필수학점을 포함하여 전체 졸업학점의 45%범위 내에서 자율 적으로 이수 할 수 있다.(개정2016.02.01.)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학생들의 학업역량강화 및 창업 또는 산업현장적응 준비를 위하여 최소 1학점 수강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1학점 수강은 1학기 또는 2학기에 한하여 적용한다.(신설 2014. 12. 29.)(개정2016.02.01.)

⑤학칙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추가 수강 가능 대상자의 기준 및 추가학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신설2016.02.01.)

1. 직전 1학기 또는 2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4.15이상인자는 다음 1학기 또는 2학기에 한하여 각 2학점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2. 3학년이상 편입학자는 여름학기 및 겨울학기에 한하여 3학점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2018.01.02)
3. 기타 교육과정 운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점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4. 제2호에서 정한 편입학자에게 적용되는 기준학점은 편입학 학년과 동일한 신입학자에게 적용되는 제한학점에 따른다.

⑥제5항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다.(신설2016.02.01.)

⑦학칙 제11조5항에서 정한 자기개발학기 및 커리어학기에 참여하는 학생의 1학기 또는 2학기 수강신청 가능 학점은 자기개발학기 또는 커리어학기의 학점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2016.08.29.)

제16조 (수강신청 교과목의 변경·취소·추가) ①수강신청 교과목의 수업시간 변경 및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 교무처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과목을 변경 또는 취소 또는 추가 할 수 있다.(개정 2015.02.23)

②제1항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이라 함은 매 학기 수강신청기간 종료일부터 학기개시 후 1주일 이내로 한다. 다만, 수업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 1주일 범위 내에서 총장이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02.23.)(개정2016.02.01.)

제17조 (수강신청 교과목의 철회) ①수강 중인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업일수 2/3선 이내에 학부장의 승인을 얻어 제15조 2항에서 정한 최소 수강학점 (최종학기는 최소 한과목)을 제외한 학점에 대하여 철회신청을 할 수 있다.

②수강신청 교과목을 철회한 경우에는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 신청할 수 없으며 납입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수강신청의 효력) ①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학기 교과목의 수강과 시험에 응할 수 없다.

②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기타사항) 등록 및 수강신청에 관하여 학칙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5조4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①학칙 제33조제2항, 제3항 및 규정 제15조 제5항의 개정에 따른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추가수강신청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2015학년도 이전 편입학생은 여름학기 및 겨울학기에 각각 2학점까지 추가로 수강신청할 수 있다.
2. 1학기 및 여름학기 또는 2학기 및 겨울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15이상인 경우 매 1학기 또는 2학기에 2학점까지 추가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②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5학년도 2학기 입학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15학년도 2학기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입학(편입학 포함) 후 첫 학기에는 우송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에서 개설하는 한국어 관련 교과목을 16학점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어능력시험(TOPIK)4급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는 소속 학과의 전공 과목과 병행하여 수강할 수 있다.
2. 위 제1호에 의하여 수강한 한국어 교과목의 이수 학점은 이수 당해 학년 및 학기에 적용받는 교육과정상 편성된 이수구분 및 학점범위 내에서 이수구분별 학점으로 이수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5.02.23.)(개정 2016.02.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제11조의2 제5항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제15조5항2호의 개정사항은 2018학년도 1학기 편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7학년도 이전 편입학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한다.